

인천광역시 영종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6. 8.

제 출 자: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1. 제안이유

병역명문가가 주소지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병역명문가” 정의 정비 (제2조제1호)
- 나. “예우대상자” 정의 중 주소지 제한 조항 정비 (제2조제2호)
- 다. 약칭 위치 변경(제3조 및 제4조)
- 라. 주소지 관련 내용 정비 (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병역법」 제82조의4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 : 입법예고 결과(2026. 8. 12.~9. 2.) 특기할 사항 없음
- 라. 기 타
 - 규제사전심사 :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영종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영종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2조제1호 및 제18조에 따라 지방병무지청장(이하 “병무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예우대상자”란 주소지와 거주지역에 관계 없이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제3조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신분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주소지와 거주지역에 관계 없이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인천광역시 영종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5조(우대)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 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 및 제18조에 따라 지방병무지청장(이하 “병무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1. ----- ----- <u>제2조제1호에 따른</u> ----- ----- ----- -----.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주소지와 거주지역에 관계 없이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 ----- ----- -----.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u>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u>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u>구청장</u> ----- -----

<u>라 한다</u>)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5조(우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u>주소가 기재된 신분증</u>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우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신분증</u>----- -----. ----- ----- ----- ----- ---
--	---

【 병역법 】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87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3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조례안명 : 「인천광역시 영종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발생 요인
 - 기존 관내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던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를 전국으로 확대(제2조제2호)
 -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 발생(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영종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함

4. 작성자

도시안전국 안전관리과장 조수준